

## 14-카.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

### 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 대학  대학원  전문대학 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6년 8월

【공시시기】 : 2026년 8월

【공시방법】 : 직접입력

【공시내용】 : 2026년 장애학생지원체제 및 운영 현황 공개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 : (장애학생지원체제 현황) 2026. 4. 1., (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) 2025. 3. 1. ~ 2026. 2월 말일)

(단위: 명, 분)

기준 연도	구분	전체 재학생 수	장애 재학생 수													
			시각		청각		지체·뇌병변		지적·자폐		기타		계			
			중증*	경증**	중증	경증	중증	경증	중증	경증	중증	경증	중증	경증		
	대학															
	대학원															
	계															

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(O/X)	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	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(O/X)	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(O/X)	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				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			학칙 및 규정	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(분)	
				센터장	센터장 자격 (①~④ 중 선택)	전담	겸직	지원 부서명	전담	겸직			

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		수혜 장애 학생수	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 (O/X)	장애학생 지원 계획 [한글/워드]
일반교육 지원인력	전문교육 지원인력			

\* 중증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 
\*\* 경증: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

### ■ 검증사항

【전체 재학생수】 : ‘전체 재학생수’는 <4-라>, <4-마>의 재학생 총계와 일치해야 함

### ■ 작성지침

【전체 재학생수】 : 2026. 4. 1. 기준 정원내·외 재학생수(장애학생 포함, 휴학생 제외)

- ※ 대학원은 전체 대학원(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) 재학생수를 합산하여 입력
- ※ 통폐합대학의 경우, 통폐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

**【장애 재학생수】** : 2026. 4. 1.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정원내·외 장애 재학생수(휴학생 제외)를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장애 종류에 따라 ‘장애 정도가 심한/심하지 않은 장애학생’으로 구분하여 입력(중복장애의 경우 주 장애 기준으로 작성)

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‘장애정도’ 구분 참고

**【장애인 특별전형 유무】** : 2026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유무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4호 관련, 신·편입학 모두 포함)

**【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】** : 2026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입학등록자 수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4호 관련, 신입학 및 편입학 포함)

**【특별지원위원회 유무】** : 2026. 4. 1. 기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유무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9조)

**【장애학생지원센터 유무】** : 2026. 4. 1.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유무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)

**【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】** : 2026. 4. 1.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현황

**【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-센터장 자격】**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2항 관련 센터장이 갖추고 있는 자격(① 교육학, 사회복지학,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, ② 교육, 보건·의료, 복지 등 분야의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, ③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,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나만 선택)

**【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】** : 2026. 4. 1. 기준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직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대학 중 센터 외 추가 지원 직원 현황

**【학칙 및 규정】** : 2026. 4. 1. 기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해당 조항을 명기하고, 학칙 및 규정에 미규정 시 ‘해당 없음’으로 표기함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2조)

**【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】** : 2025. 3. 1. ~ 2026. 2월 말일 기간 중 대학의 장이 이행한 교직원·보조인력·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시간 합계를 분 단위로 입력함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제2항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)

**【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】** : 2026. 4. 1. 기준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,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자체 보조인력 인원 전체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1조)

※ 일반 교육지원인력(대학생, 일반인 등), 전문 교육지원인력(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, 수화통역사, 점역사 등)

**【수혜장애학생수】** : 2026. 4. 1. 기준 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수

**【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】** : 2026년 1학기 기준 장애 재학생 대상 개인별 교육지원계획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의2) 수립 여부

**【장애학생 지원 계획】**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에 따른 2026년 장애학생 지원 계획

※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의2(개인별 교육지원계획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(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)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

※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, 편의시설 구축 현황, 보조공학기기 구비 현황, 대학생활 지원 계획 등 포함

※ 장애학생 지원 계획은 문자를 소리 및 점자 등으로의 변환을 위해 편집 가능한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공시해야함(PDF 파일은 이미지로 인식하여 변환 불가)

## ■ 참고사항

-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
- 재학생 수는 2026년 <4-마> 재학생 현황 활용